

2026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요강
- “가” 군 -



2025. 6. 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ttps://lawschool.uos.ac.kr/\)](https://lawschool.uos.ac.kr/)

본 모집요강의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1
II. 전형별 모집인원	2
III. 전형 일정	2
IV. 지원 자격	3
V. 제출 서류	4
VI. 전형 방법	8
VII.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
VIII. 안내 사항	11
IX. 비법학사 및 타대학 학사학위자 선발비율	13
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3
XI. 선발결과의 공개	14
XII. 이의 신청	14
별첨. 제출서류 양식	15

I.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 가.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교양 및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 나.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 다.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본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생 선발 원칙을 따른다.

- 가. 지원자의 사회활동경력, 봉사활동경력 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입학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 나.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입학자들의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한다.
- 다.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평가하여 글로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학자를 선발한다.
- 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전문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입학전형 기준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며 그 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전형관련 서류에 부모·친인척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실격 조치한다.
- 나. 아울러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면접 가번호 부여, 외부 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을 시행하여 입시전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서류심사와 면접방식을 채택하고자 노력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lawschool.uos.ac.kr/>)에 공개되어 있다.
- 나. 입학전형과정 상 오류의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의 이익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등)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익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한다.

II. 전형별 모집인원

학위과정	모집군	전형구분	모집인원	비율
법학전문석사과정	"가"군	일반전형	45명	90%
		특별전형	5명	10%
		합계	50명	100%

- ※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입학생 중 30%는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등에 해당)을 고려한 기준만으로 선발함.
- ※ 결원에 의한 2026학년도 정원 외 인원의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여부 및 기타 상세 내용이 결정됨.

III.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접수	2025.9.22.(월) 9:00 ~ 9.26.(금) 18:0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uos.ac.kr), (주)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만 시행
지원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방문접수] 2025.9.29.(월), 9.30.(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 2025.9.23.(화) ~ 9.30.(화) 18:00	(우)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법학관 533호)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 통지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25.10.28.(화) 15:00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통지 없음
면접 및 구술고사	2025.11.8.(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최초 합격자 발표	2025.12.8.(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통지 없음
최초 합격자 등록	2026.1.5.(월) 10:00 ~ 1.6.(화) 16:00	지정은행	미등록 시 합격취소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6.1.9.(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통지 없음
1차 추가합격자 등록	2026.1.12.(월) 10:00 ~ 1.13.(화) 16:00	지정은행	미등록 시 합격취소
이중등록자 등록포기 마감일	2026.1.30.(금)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지원 자격

1. 일반전형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까지 취득예정인 자(일본 소재 대학은 2026년 3월까지) 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함.

가. 2025년에 시행된 법학직접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취득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에 한함)의 정규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2.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발 유형	지원 기준
신체적 배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서 발급대상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V.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입학지원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함.
	학사학위 증빙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하는 학사학위과정(법학사 또는 비법학사)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학사편입학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학사학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사편입학한 대학의 학사학위(예정)증명서와 함께 최초 졸업대학의 학사학위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p>[외국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대학이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규대학이라는 인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IAU(http://www.whed.net/home.php)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세부 detail 화면 출력 ◦ 등재되어있지 않은 출신학교의 경우,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 영사(또는 주한 공관영사) 확인서 발급 ◦ 단, 중국대학은 '中國高等教育学历查詢報告'제출 (http://www.chsi.com.cn의 学历网上查詢 참조) <p>※ 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p>
	학사학위 취득대학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하는 학사학위과정(법학사 또는 비법학사)의 성적증명서 (※일반편입학의 경우 학위취득대학의 성적만을 반영하며, 학사편입학 등으로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학위취득대학의 성적만을 반영함) -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 후 성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가 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해 평가함)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함. <p>[외국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예정)대학의 이수학기, 평점평균, 성적산출근거 등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자유양식) <p>※ 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p>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2025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에서 받은 성적표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TOEFL, TOEIC, TEPS 중 어느 하나의 정규시험에서 얻은 성적표
	자기소개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출함.
	제출서류목록표	1부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서류목록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출함.
선택 제출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입증자료	각 1부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서류목록표'에 기재한 서류 예) 재직(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합격확인서, 대학입학 이후의 수상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2외국어 성적표, 사회봉사 활동 사실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등 ※ 필수 제출 서류는 제외함.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에 원본을 지참하여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 접수처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제2외국어 성적표 제외)를 제출할 때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후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외국대학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중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학사학위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2026년 2월 27일(금) 18:00까지 학사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마. 필요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자료요청과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바. 모든 전형요소의 성적 반영은 지원자가 제출한 원본 증빙서류에 근거합니다.
- 사. 모든 지원자는 서류 제출 기간 중 전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 접수된 서류는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선택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원본서류는 발급기관 직인 날인 요망. 전자관인이 날인된 경우는 원본식별 가능해야 함.
- 나. 직인이 부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발급기관에서 담당자 연락처 및 성명기재, 확인(도장) 득하여 제출
- 다. 전자관인이 날인되고 원본표시가 별도로 없는 경우 해당 문서가 원본임을 본인이 확인 후 제출 (기재내용: “해당 문서는 원본임을 확인함.” 아래 본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 라. 증빙자료 원본 확인 불가 시 지원서에서 반드시 해당 항목 삭제 후 제출
- 마. 법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군인은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 중 하나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전형 제출 서류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본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경제적 배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p>자녀</p> <p>○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p> <p>○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인 그의 자녀</p>	<p>로 발급)</p> <p>○ 주민등록등본</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p> <p>○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p> <p>○ 주민등록등본</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사회적 배려 대상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p>	<p>○ 국가유공자확인원</p> <p>○ 건강보험증 사본</p> <p>○ 가족관계증명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p>	<p>○ 독립유공자확인원</p> <p>○ 건강보험증 사본</p> <p>○ 가족관계증명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p>	<p>○ 의사상자증명서</p> <p>○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p>	<p>○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p> <p>○ 주민등록등본</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p>	<p>○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p> <p>○ 혼인관계증명서(부모)</p> <p>○ 가족관계증명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p>	<p>○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p> <p>○ 주소지 변경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본인의 부모 등 보호자 각 1부)</p> <p>○ 가족관계증명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p>○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p>	<p>○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p> <p>○ 가족관계증명서</p> <p>○ 자기확인서(진술서)</p>	

- ※ 지원자격과 그 적용법규는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2025.9.30.)을 기준으로 함.
- ※ '자기확인서' 서식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소정 양식을 지원자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 ※ '자기확인서'에는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장애등급 등 본인이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
- ※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단,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교육부의 최종 지침(2018.7.3.)에 따라 위 지원 자격만 고려함(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 ※ 지원자격의 적격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VI. 전형 방법

1. 전형방법

- 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동일한 절차, 방법, 기준에 의함.
- 나. 1단계 전형의 성적우수자 순으로 전형별 입학정원의 300%(일반전형)와 400%(특별전형)를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함(단, 비법학사를 1/2이상 포함하여 선발).
- 다. 특별전형의 경우 경제적 여건 쿼터제 적용에 따라 최소 3배수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순위자를 1단계 합격자로 추가할 수 있음.
- 라. 2단계 전형 평가 후, 1단계 전형의 성적과 합산하여 성적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마. 특별전형 지원자 중 장애인인 지원자에 대하여서는 장애유형 및 등급 등을 고려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준비시간 및 시험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희망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바. 미등록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 순위는 별도 고지하지 않음.

2. 1단계 전형의 전형요소별 구체적 평가내용

가. 법학적성시험성적

- 2025년도에 시행한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나. 학사학위과정 성적

-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평점평균의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반영함.
- ※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 후 성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가 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해 평가함).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TOEFL, TOEIC, TEPS 중 어느 하나의 정규시험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함.
- ※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평가 점수는 다른 유형의 성적에 준하여 부여함.(예시 : TOEIC의 경우 RC 시험을 두 배로 환산하여 처리함)

라. 서류평가

- 제출한 서류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기초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함.
 - ① 학업수행능력
 - ② 장래 학업계획 및 발전가능성에 관한 사항
 - ③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활동 경력
 - ④ 대학 입학 이후 행한 봉사활동 경력
- ※ 자기소개서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 ※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일괄 음영처리 됨.

3. 2단계 전형의 전형요소별 평가내용

가. 면접 및 구술고사

- 다음의 사항을 평가함.

- ① 기본인성에 관한 사항
- ② 논리력, 창의력, 성실성, 책임감,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③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 면접 시 수험번호를 대신하여 가번호가 부여됨.

※ 외부 면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의 면접위원이 평가 실시

※ 면접 시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수험생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함.

나. 논술

- 법학적성시험에서 시행한 논술을 평가함.

4. 동점자 처리 기준

가.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킴.

나. 2단계 - 일반전형

- 1순위 :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고득점자
- 2순위 : 학부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 3순위 : 면접 및 구술고사 고득점자

다. 2단계 - 특별전형

- 1순위 : 면접 및 구술고사 고득점자
- 2순위 :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고득점자
- 3순위 : 학부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라. 위의 처리 기준에 따라서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발함.

5. 추가모집

일반·특별전형에서 예비 후보자 또는 쿼터에 따른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하여 충원함.

VII.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단계별 전형요소 및 배점

전형 단계	선발 비율 (%)	전형요소	배점	
			일반전형	특별전형
1단계	일반 전형 300%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35점	35점
		서류평가	20점	20점
	특별 전형 400%	학사학위과정 성적	15점	15점
		공인영어시험 성적	10점	10점
2단계	100%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	15점	15점
		법학적성시험 중 논술영역 성적	5점	5점
전형총점			100점	100점

2. 1단계 전형요소별 환산방법 및 실질반영률

전형요소	배점	기본 점수	환산방법		요소별 실질 반영율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35점	-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 × 0.2) +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 0.2)		50.00%	
서류평가	20점	-	-		28.57%	
학사학위과정 성적	15점	5점	(100점만점 환산점수 × 0.10)+5		14.29%	
공인영어시험 성적*	10점	5점	935점 이상 : 만점 935점 미만 : (토익점수 × 0.005)+5		7.14%	
계	80점	10점	-		100%	

※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환산점수가 3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점으로 반영함.

※ 토익 이외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정해진 환산표(TEPS 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TEPS-TOEIC-TOEFL 환산표)에 따라 변환하며, 1:1 대응하지 않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반영함.

Ⅷ. 안내 사항

1. 지원 및 등록 시 유의사항

- 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모집군에 속하는 다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고 모집군을 달리하는 다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도 합격한 경우 어느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내역

전형유형	전형료	1단계 전형 불합격자 환불금액
일반전형	110,000원	40,000원(예정)
특별전형	10,000원	없음

나. 전형료 환불

- 1) 대상 : 일반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자(특별전형 지원자와 면접 및 구술고사 결시자는 해당되지 않음)
- 2) 금액 : 40,000원(예정)
- 3) 방법 및 시기 : 1단계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기재한 환불 계좌로 입금(별도공지 없음)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입시시행 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일부 또는 전액(대행업체 수수료 제외) 반환받을 수 있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참조).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입학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입학지원서 인터넷접수 마감일인 2025년 9월 26일(금) 18:00까지 전형료에 대한 전자결제를 하여야 접수 완료됩니다.
- 나.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다.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나타나는 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인터넷으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입학지원서(출력본)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연락 없이 결격처리 됩니다.
 바. 인터넷 원서접수 접수 장애 발생 시 (주)유웨이어플라이(고객센터 1588-8988) 업체로 문의 바랍니다.

4.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관련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입학지원서 기타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의 신상정보(성명, 출신학교명, 직장명, 직업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됩니다.

구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부모 및 친인척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실격조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000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실격조치 또는 감점조치*
지원자 본인	본인의 실명, 출신학교명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 기재시	① 나 ○○○은 ② ○○○학교(초·중·고·대학교 등)를 다니면서	감점조치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함.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실격 또는 감점조치 될 수 있음.

*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자기소개서(경력사항 및 기타사항 포함) 내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입학지원서 기타 제출서류에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류제출을 금지합니다.

※ 원서접수시 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금지

※ 자기소개서에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여부 관련 정보 작성 금지

라. 법학관련 사설시험의 성적 및 관련서류 제출을 금지합니다.

마. 서류평가 시 지원자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출신학교명을 음영처리하여 실시합니다.

바.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면접위원 구성 시 대학 외부 인사를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시하는 등 정성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모든 지원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형기간 중 항상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고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성적 허위기재 및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졸업예정자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입학전형에 관한 개별성적 및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전화 및 방문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 마. 등록 포기 및 등록금 반환 방식에 관한 사항은 등록 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 바.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장애인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때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 실시 3일전까지 우리 대학원 행정실 (담당자 연락처 : 02-6490-507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본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IX. 비법학사 및 타대학 학사학위자 선발비율

1. 비법학사

- 가. 비법학사를 전체 모집인원의 1/2 이상 선발함.
- 나. 비율 충족 여부 판단 시, 법학 학사학위와 비법학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봄.

2. 타대학 학사학위자

- 가. 타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2 이상 선발함.
- 나. 비율 충족 여부 판단 시, 학사편입을 한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일자 및 발표방법

- 가. 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최초 합격자는 2025년 12월 8일(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uos.ac.kr/>)를 통하여 발표함.
- 나. 합격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함.
- 다. 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함.
- 라. 소득분위별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신청을 완료한 자 중에서 선발하므로 특별전형 합격생을 포함한 모든 합격생들은(예비합격 포함)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

- 가. 2차 추가합격자부터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의 등록의사를 확인한 후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모든 지원자는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전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함.

XI. 선발결과의 공개

- 합격자의 출신대학, 전공, 성별, 정량평가요소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XII. 이의 신청

-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음.
-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우리 대학교 및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됨.

이하의 별첨 제출서류 양식의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입학지원서 양식

2026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응시군	“가” 군		전형유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험번호
학사학위*	법 학 사() 비법학사()		특별전형 지원자격				※
지원자	성명	한글		성별	남 . 여	연령	만 세
		한자		주민등록 번호			
	본인휴대폰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비상연락처		
유선전화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구분	졸업구분	소재지
	~		대학교				
	~		대학원				
	~						
	~						
학사학위 과정*	대학(교)	대학 학과	학사학위 과정성적*	평점 평균		백분위 점수	
				/		/	
법학 적성시험 성적	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공인영어성적	시험 종류		
	언어이해				취득 성적		
	추리논증				시험시행일		
<p>* 복수의 학사학위 취득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학위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기재하여야 함.</p> <p>위 본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p>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자 확인	※		

자 기 소 개 서

지원자 지원정보			
성 명		전형유형	일반전형() / 특별전형()
수험번호	※	응시군	"가" 군

※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의 신상정보(성명, 출신학교명, 직장명, 직업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실격 처리됩니다.

구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부모 및 친인척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00지방법원장	실격조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000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실격조치 또는 감점조치*
지원자 본인	본인의 실명, 출신학교명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 기재시 ① 나 000은 ② 000학교(초·중·고·대학교 등)를 다니면서	감점조치

-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함.
-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실격 또는 감점조치 될 수 있음.
- *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현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음.
- ◆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류 제출을 금지합니다.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금지
- ※ 자기소개서에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 관련 정보 작성 금지
- ◆ 법학 관련 사설시험의 성적 및 관련서류 제출을 금지합니다.
- ◆ 근무처, 발급기관, 시상기관, 단체명 등에 출신학교명이 포함될 경우 "000대학원", "000대학교", "000고등학교", "000중학교", "000초등학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 경력 등 기타사항은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경력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력

기 간 (통산년월)	근 무 처 (※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담당업무 (또는 활동내용)
-		

(2) 병역관계 군필() 미필() 복무중() 해당 없음()

3. 사회생활과 학업

(성취 또는 실패의 개인적인 구체적 사례와 그로 인한 변화를 서술. 600자이내)

4. 지원동기

(법조인이나 법학에 관심을 두게 된 구체적 계기,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 본 학교에 지원하는 구체적 이유 서술. 600자이내)

5. 자신이 생각하는 법조인상과 장래계획

(자신이 꿈꾸는 법조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서술. 600자이내)

6. 자신의 장·단점과 특성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 사건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 600자이내)

[별첨 3] 입시서약서 양식

입 시 서 약 서

【징계사항 여부】

○ 대학,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란에 √)

예[] 아니오[]

○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내역 및 사유를 작성하십시오.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실격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할 것

【서류활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입학지원서 기타 제출서류를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1. 본인은 자기소개서, 입학지원서 및 입시서약서의 기재사항과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자기소개서, 입학지원서 및 입시서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실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별첨 4] 제출서류목록표 양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수험번호	※	전 형 유 형	일반전형() / 특별전형()
성 명	한글 :	응시군	"가" 군
	한자 :	학사학위 과정	법학사() / 비법학사()

※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번호	발행일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대학교)	발행기관(*) (대학교, 대학원)	비고
1				○○○대학교,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필수제출서류는 제출서류목록표에 작성하지 마시오.
- ◆ 발행기관이 "대학교", "대학원"인 경우 발행기관(대학교, 대학원) 작성란에 "○○○대학교", "○○○대학원"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실제 대학교명, 대학원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참조)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류 제출을 금지합니다.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금지
- ◆ 법학관련 사설시험의 성적 및 관련서류 제출을 금지합니다.
- ◆ 작성한 후 출력하여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시오.
 - (편철순서: 입학지원서 → 학사학위증빙서류 → 학사학위취득대학 성적증명서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자기소개서 → 입시서약서 → 제출서류목록표 → 증빙서류)
- ◆ 원본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자기확인서 양식 (특별전형 지원자만 작성)

자 기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대학교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년 _____ 월 졸업(예정)	
연락처	주 소	우)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확 인 내 용			
<p>※ 차상위 계층인 경우,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p>			
<p>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_____ (서 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구 분	세 부 항 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 학사 및 학생지도활동, 중복지원 및 중복합격자 조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활용(학력조회 장학 학사 통계업무 등) - 기타 본교에서 제공하는 안내 등에 활용
개 인 정 보 수 집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지원자 : 지원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학교정보 등) · 특별전형 지원자(경제적 취약계층) : 소득 및 재산정보 - 선택항목 : 필수항목 중 일부는 원서접수 인터넷 업체에 따라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음.
개 인 정 보 보 유 · 이 용 기 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함.
제 공 거 부 에 따 른 불 이 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십니까?

예 아니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성 명 : (자필 서명)